2022학년도 군산동산중학교
학교폭력예방 교육계획

2022. 3.

군산동산중학교 생활안전교육부

2022학년도 군산동산중학교 학교폭력예방 교육계획

Ⅰ 목적

1. 학교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 현장 조성
2.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
3. 학교폭력 발생 시 관련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 주체 간 신뢰 형성

Ⅱ 근거 및 관련 법률

1.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, 제15조, 동법 시행령 제17조
2. 학교폭력 공시 지침 (공시내용: 당해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)

Ⅲ 개요

1.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상시 운영 - 군산동산중학교-2410(2022.3.25.)
2.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- 군산동산중학교-1675(2022.3.4.)
3.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- 군산동산중학교-2060(2022.3.16.)
4.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안전대책 - 군산동산중학교-2374(2022.3.23.)

Ⅳ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상시운영

1. 구성 및 운영 (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, 동법 시행령 제16조)

가. 구성권자: 학교장

나. 구성원: 7명 (교감, 생활안전부장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학부모 3명)

다. 구성 및 위촉

	교원	학부모
내용	학교장이 구성(임명)	학교운영위원회 추천 → 학교장 위촉
임기	본교 재직기간	자녀의 재학기간 (중도에 변경되면 신규 구성원은 전 구성원의 잔여 임기)

라. 개최 (분기별 개최 의무는 없으나 사안 발생 시 반드시 개최)

1) 전담기구 개최를 위한 정족수 및 학부모 참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

2) 학부모의 참석여부는 사안의 경중 및 특성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

3) 출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·여비 지급 가능 (일시는 가능한 방과후, 주말)

4) 비밀유지 : 전담기구 구성원은 알게 된 비밀과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

마. 구성원별 역할 분담

순	구 성 원	성 명	역 할
1	교감	조**	- 학교폭력 전담기구 총괄
2	생활안전 부장교사	김**	- 학교폭력 사안조사 ▸ 목격자, 담임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 등의 협조 ▸ 피해·가해 사실, 조사 진행 상황을 육하원칙으로 기록 ▸ 증인 및 증거자료 확보 ▸ 조사결과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
3	전문상담 교사	박**	- 피해·가해 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▸ 피해·가해 사실, 조사 진행 상황을 육하원칙으로 기록 ▸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, 일시보호 - 성 관련 사안 처리 시 증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의 협조
4	보건교사	장**	- 피해·가해 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▸ 피해학생 일시보호,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지원 ▸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송 - 성 관련 사안 처리 시 증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의 협조
5	학부모	이**	-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 조정 -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협조
6	학부모	김**	
7	학부모	유**	

2.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

면담, 상담, 목격, 신고, 언론보도, 수사기관 등을 통해 사안 인지(접수)

↓

초기대응

- 신고접수대장 기록
- 즉시조치: 관련학생 안전조치, 학교장 긴급조치[1]
- 사안통보: 학교장 보고, 담임교사와 보호자 통보
- 사안보고: 교육청 사안보고 (48시간 이내, 공휴일 미포함), 중대사안 유선 및 서면 보고

전담기구 사안조사

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→ 회복조정 신청

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→
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(2주 이내)
※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

↓

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

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(오인신고, 안전사고 등)

↓

- 동의 → 담임 해결 학교폭력 아님 사안처리 → 내부결재 종결
- 미동의 →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

학교폭력인 경우 (피해상황이 있고)

↓

<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>

※ 2주 이내 결정,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

✓ 관련학생 측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서면 확인

✓ 학교장 자체 해결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 기준 심의

①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(제출기한 엄수, 회수 불가)
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(복구를 약속하고 이를 인정)
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(보편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)
④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

↓

기준 충족

↓

학교장 자체해결 종결[2]

↓

- 내부결재 (아래 서류 첨부)
  - 사안조사보고서
  - 자체해결요청서
  - 심의결과보고서

↓
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
- 학교폭력 사안보고서 제출

관련학생 및 보호자 통보

←
- 새로운 사실(증거) 추가 확인
- 피해복구 약속 미이행

↓

-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취소
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

기준 미 충족

↓

심의위원회 개최 요청

↓

교육지원청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
(3주 이내 개최)
※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

---

1) 학교장 긴급조치는 피해, 가해학생의 구분이 명확할 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.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가해자(교사 포함)로부터 피해학생을 3일 이내 분리해야 함.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는 경우 학교장 직권으로 긴급조치 취소(내부결재)

2) 동일 사안에서 피해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학생이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어야 자체 해결 가능. 단, 가해학생이 한 명이고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피해학생 별로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가능.

3. 학교폭력 사안처리 상세과정

<table>
<tr><td>초기개입</td><td>- 사안접수 :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상시 비치, 접수된 사안 기록·관리
- 즉시조치 : 72시간 이내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자(교사 포함) 분리 등
- 사안통보 : 학교장 보고 → 담임교사 통보 → 학부모 신속·명확 통보
(유선, 내교요청, 통보 일자, 통보 방법, 통보 사실 등을 기록)</td></tr>
<tr><td>교육지원청
사안 보고</td><td>-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 교육지원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동시 보고
-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안을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
(112, 117, 학교전담경찰관 등)
- 48시간 이내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군산교육지원청에 최초 보고함. (중대한 사항은 즉시 유선 보고)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최초보고</td><td colspan="3">최초 보고된 사안은 반드시 최종보고를 하여야 함</td></tr>
<tr><td>학교폭력이 아님
담임해결 사안</td><td>학교장
자체해결 사안</td><td>심의위원회에서
조치를 받은 사안</td></tr>
<tr><td>초기 사안조사 후
48시간 이내 보고</td><td>최초 보고된
사안만 보고</td><td>학교장 자체해결로
종결된 후 보고</td><td>심의위원회 조치
이행이 완료된 후 보고</td></tr>
</table>
<table>
<tr><th>순</th><th>교육지원청명</th><th>FAX 번호</th><th>순</th><th>교육지원청명</th><th>FAX 번호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1</td><td>전라북도교육청</td><td>220-9411</td><td>8</td><td>완주</td><td>270-7639</td></tr>
<tr><td>학생인권교육센터</td><td>237-0120</td><td>9</td><td>진안</td><td>432-6337</td></tr>
<tr><td>2</td><td>전주</td><td>251-2031</td><td>10</td><td>무주</td><td>322-4649</td></tr>
<tr><td>3</td><td>군산</td><td>0303-0944-2769</td><td>11</td><td>장수</td><td>351-2718</td></tr>
<tr><td>4</td><td>익산</td><td>837-1682</td><td>12</td><td>임실</td><td>642-2723</td></tr>
<tr><td>5</td><td>정읍</td><td>533-5929</td><td>13</td><td>순창</td><td>653-1460</td></tr>
<tr><td>6</td><td>남원</td><td>631-4701</td><td>14</td><td>고창</td><td>561-5835</td></tr>
<tr><td>7</td><td>김제</td><td>540-2599</td><td>15</td><td>부안</td><td>581-1318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학교폭력
사안 조사</td><td>- 전담기구 외 소속 교직원도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
- 학교폭력 유형 파악 : 신체적 · 경제적 · 정서적 · 언어적 · 사이버 폭력
- 학교폭력 경중 파악 :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, 협박(보복성) 여부, 심각성 · 고의성 · 지속성 · 반성의 정도, 선도 가능성, 집단폭력, 흉기사용, 폭력서클, 행위의 주도성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
<table>
<tr><td>사실확인</td><td>- 피해 · 가해 · 목격학생 대상 면담 실시
- 사안 확인서, 보호자 의견서(선택) 확보
- 설문조사, 증거자료 수집 (이메일 · 채팅 · 문자 · 진단서 · 소견서)</td></tr>
<tr><td>정보수집</td><td>- 교우관계, 학교생활, 사안경험 유무, 상담내역, 특이사항 등
- 피해 · 가해학생의 현재상태, 대응능력, 힘의 불균형 등 파악</td></tr>
<tr><td>요구사항 확인</td><td>-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욕구 및 방향성 파악</td></tr>
<tr><td>회복조정</td><td>- 관계개선 · 회복을 위한 조정의사 확인, 회복조정 지원 요청</td></tr>
<tr><td>보고서 작성</td><td>- 사안확인서, 면담일지 등을 기초로 사안조사보고서 등 작성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담임, 학교장
자체해결
여부 심의</td>
<td>
- 2주 이내 학교장 자체 해결 심의(회복조정)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
※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기 가능 (최대 3주 이내)
-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 시 해당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통해 회복적 생활 교육을 실시함.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같은 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관련되어 있는 학교폭력</th></tr>
<tr><td>피·가해
불명확</td><td>
- 사안보고 : 학교별 사안보고 (교육지원청으로 48시간 이내)
- 사안조사 : 학교별 사안조사
- 관련학교 협의 : 사안조사 &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결과 공유
<table>
<tr><th>관련학생 측 모두
학교장 자체해결 동의</th><th>학교장 자체해결 반대</th></tr>
<tr><td>- 학교장 자체 해결 종결
- 학교별 내부결재</td><td>- 학교별 사안조사 내용, 쟁점사항 협의
- 학교별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일 협의
- 학교별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공문 발송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피·가해
명확</td><td>
- 사안보고 및 사안조사, 관련학교 협의를 통한 사안 공유 등
-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후 결정
-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결정에 따름
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학교폭력
가해학생
생활기록부
삭제 심의</td>
<td>
- 학교폭력 가해학생 4, 5, 6, 8호는 졸업 직전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
※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대장 관리 → 삭제 여부 심의
→ 대상자 명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보 → 삭제 승인 이후 생기부 정정
- 1, 2, 3, 7호는 별도의 전담기구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
<table>
<tr><td>1호</td><td>2호</td><td>3호</td><td>4호</td><td>5호</td><td>6호</td><td>7호</td><td>8호</td><td>9호</td></tr>
<tr><td>서면
사과</td><td>접촉
금지</td><td>학교
봉사</td><td>사회
봉사</td><td>특별
교육</td><td>출석
정지</td><td>학급
교체</td><td>전학</td><td>퇴학</td></tr>
</table>
- 1, 2, 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 가능
<table>
<tr><td>기재 유보
기준</td><td>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를 이행 기간 내 완료
②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</td></tr>
</table>
※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학교폭력으로 추가 조치를 받은 경우 소급 기재
</td>
</tr>
</table>

4. 현행 신고체계

가.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신고접수

나. 학교폭력신고센터 '117' / 홈페이지(http://www.safe182.go.kr)

다. 핸드폰 문자신고 '#0117'

라.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유선 전달

5. 피해학생 보호조치

가. 통보 기한 : 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**피해학생 측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하여야 함.**

나. 조치 유형

1호	2호	3호	4호	6호
심리상담 및 조언	**일시보호**	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	학급교체	**그 밖에 필요한 조치**

1) 5호 전학권고 : 삭제(2012.3.21.)

2) 그 밖에 필요한 조치 : 병원, 법률, 전문기관 등에 협조 및 지원 요청

3) 학교장 긴급조치 : 1호, 2호, 6호 → **심의위원회 보고**

다. 추가적인 보호 및 지원

1) 출석일수 포함 ↱ **진단서, 소견서 등을 고려해 보호조치 결정 전의 결석도 포함**

- 인정 범위 : 학교장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- 교육상 필요한 조치 마련 : 결석기간 학습자료 제공, 가정학습 지원 등

2) 불이익 금지

- 보호조치를 이유로 성적 및 각종평가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
- 결석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면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

라. 전문상담심리기관 현황

1) 피해학생 및 보호자 전담기관 : 무료상담 기관

지역명	기관명	주 소	전화번호
전주	마음치유센터	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4	063-271-0117

2) 피해학생 전문상담심리기관 : 도교육청 심리상담 비용 지원

지역명	기관명	주 소	전화번호
군산	그린맘 심리발달연구소	군산시 월명로 215	063-466-6454
군산	군산 본심리상담센터	군산시 축동안3길 24, 201호	063-465-2592
군산	초록숲 인지언어심리상담	군산시 대학로 245, 202	063-465-9999
군산	문현정심리상담센터	군산시 상지곡안4길 47-1, 2층	010-8888-7026

6. 가해학생 선도조치

가. 통보기한 : 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**14일 이내에 해당조치 통보**

나. 조치 유형

1호	2호	3호	4호	5호	6호	7호	8호	9호
서면 사과	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	학교에서의 봉사	사회 봉사	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	출석 정지	학급 교체	전학	퇴학 처분

1) 학교장 긴급조치 : 1호, 2호, 3호, 5호, 6호 → **심의위원회 추인**

-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는 경우 학교장 긴급조치 취소 가능(내부결재)
-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, 5호•6호는 병과 가능

2) 출결 처리 방법 : 출석인정결석(3호, 4호, 5호), 무단결석(6호)

다. 유형별 조치 부과 방법

완료기한 명시	- 1호, 3호 → **예시)** 조치이행 완료기한 반드시 명시, 00.00.까지 이행
이행기간 명시	- 2호 → **예시)** 조치이행 기간 명시, 00.00.~00.00.까지
일 단위 조치	- 5호(특별교육이수), 6호 → **예시)** 00일
시간 단위 조치	- 3호, 4호, 추가되는 특별교육이수 조치 → **예시)** 00시간
회기 단위 조치	- 5호(심리치료), 추가되는 심리치료 조치 → **예시)** 00회기

라. 유의사항

1) 3개월 이내 시행 :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**3개월 이내에 시행**하여야 함

- 3개월 이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명단 교육지원청으로 보고
- 학생·보호자에게 재통보, **1개월 이내 미이행하면 추가 조치 서면 안내**

2) 학적 변동 제한 :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완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 변동X

(예외: 성폭력 등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는 내부결재 후 가능)

3) 조치사항 관리(유보)대장 기록 및 보관

- 전출교는 전입교에 관리대장 송부 → 전입교는 비공개 문서로 관리

4) 외부기관에서 조치 이행이 어려운 경우(사회봉사, 특별교육 등)

- 학교장 책임 하에 조치 변경사항을 내부결재 후 학교 자체 시행
-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내실화된 프로그램 마련

5) 특별교육 유형

-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: 5호 특별교육 (기간제한 없음, 생활기록부에 기재)
- 원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 : 권장 시간 있음, 생활기록부 미기재

2호	3호	4호	6호	7호	8호
4시간 이내			5 ~ 8시간 이내		

- 보호자 특별교육 : 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보호자도 부과

마. 특별교육기관 현황

지자체 운영 전문기관			
지역명	기관명	주 소	전화번호
전주	전주시 청소년꿈키움센터	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5	063-277-9890
군산	군산청소년경찰학교	군산시 팔마로 60	063-441-0143
온라인	전국학부모지원센터 (학부모 On누리)	www.parents.go.kr	1899-0025
성 관련 전문기관			
지역명	기관명	주 소	전화번호
군산	군산 성폭력 상담소	군산시 구영 7길 8	063-445-1366
위(Wee) 센터			
센터명	전화번호	학교 위(Wee) 클래스 및 상담실도 특별교육기관으로 인정	
군산	063-450-2850		
청소년상담복지센터			
지역명	전화번호	전북) 063-273-1411	
군산	063-468-2870		
대안교육 위탁교육시설			
지역명	기관명	주소	전화번호
전주	꿈누리교실(대안교육지원센터)	덕진구 모래내 6길 17	063-253-2279
무주	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	안성면 장무로 1559-11	063-323-2287
군산	가온누리희망틔움	소룡동 청소년회관로 84	070-8738-1318
군산	내일을여는학교	군산시 대학로 65	063-445-2013
군산	다음세대학교	조촌5길 74-6	063-452-6326
군산	산돌학교	월명안길 1	063-446-4460

V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

1.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

가. 정기교육

교육	대상	시행 횟수 및 시간	일시	강사	비고
학교폭력 예방교육	학생	학기별 1회 이상 (연 8시간이상) 사이버폭력, 성폭력, 언어폭력 등	1학기: 3월~4월 (1시간)	생활안전부장	학교폭력 예방교육
			1학기:7/11,7/13 (1시간)	외부강사	학교폭력 예방교육
			2학기: 9월 중 (1시간)	생활안전부장	학교폭력 예방교육
			2학기:12월 중 (1시간)	교과담임	사이버폭력예방교육
			1학기:7월 중 (3시간)	교과담임	어울림프로그램
			2학기:12월 중 (3시간)	교과담임	어울림프로그램
	교직원	학기별 1회 이상	1학기, 2학기	교원의무연수대체	연수원 활용가능
			교직원회의(3월,9월)	생활안전부장	학교폭력 예방교육
	학부모	학기별 1회 이상	1학기: 4월 중	생활안전부교사	교육과정운영계획
			2학기: 10/28	생활안전부교사	e-알리미
인권교육 (교권보호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 포함) 다문화 이해교육 (2시간)	학생	학기별 2시간 이상 (연4시간이상)	1학기:3/3 (1시간)	외부강사	인권교육
			1학기: 3/28 (2시간)	교과담임	장애인식개선교육
			12월 중 (2시간)	교과담임	다문화 이해 교육
	교직원	연 2회 이상		교원의무연수대체	연수원 활용가능
	학부모	연 2회 이상	1학기: 4월 중	생활안전부교사	교육과정운영계획
			2학기: 11/4	생활안전부교사	e-알리미
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	학생	연 1시간 이상	1학기: 3/14	학급담임	
	교직원	연 1시간 이상		교원의무연수대체	연수원 활용가능
	학부모	연 1시간 이상	1학기: 5/4	생활안전부교사	e-알리미
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	학생	학년별 연 6시간 이상	1학기: 3~6월	국어사회기가 도덕체육	
			1학기: 7/8 (1시간)	외부강사	자살예방교육
			2학기: 8~11월	국어영어사회 도덕기가체육	
	교원	연간 4시간 이상		교원의무연수대체	연수원 활용가능
	학부모	연 1회 1시간이상	1학기: 4월 중	생활안전부교사	교육과정운영계획
흡연·도박 예방교육	학생	연1회, 1시간이상	1학기:7/14~15 (1시간)	외부강사	흡연·도박예방교육
	교사	원격연수(15시간)		교원연수 대체	신규 교사
	학부모		1학기:4월 중	생활안전부교사	교육과정 운영계획
인성교육	학생		2학기:12월 중 (3시간)	외부강사	
	교원	연 1시간 이상		교원의무연수대체	연수원 활용가능

나. 수시교육 : 담임협조, 가정통신문, 홈페이지, E알리미, 메신저 등 활용

대 상	내 용 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)
학생	• 학급 단위로 실시하고 강의, 토론회, 역할극 등의 다양한 방법 활용 • <u>연 5차시 (사이버폭력예방 1차시, 도박예방 1차시 포함)</u> •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전담기구 홍보 • 매일 5분씩 조·종례 시간을 활용한 담임 생활 지도 - 정규교과,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외 지도로 매월 2시간 교육 효과 입증 - 알림장에 지도 내용 한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지도
교직원	•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,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•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, 학생안전강화대책 • 교원의무연수 활용
학부모	• 학교폭력 징후 판별, 발생 시 대응요령 •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• 자녀 대화 기술, 학생안전강화대책

2. 회의록 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안내

가. 자치위원회 회의록처럼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·피해 당사자,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 사안조사 자료는 **비공개를 원칙으로 함**

나.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예방 및 사안 관련 **학생·학부모(특히 목격자) 보호** 안내

3. 참고 자료 안내

가. 아동학대 예방교육 :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(http://www.korea1391.go.kr)

나. 가정폭력 예방교육 : 여성가족부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(http://shp.mogef.go.kr)

다.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누리집 (http://www.dorandoran.go.kr)

→『정보마당/학교폭력예방교육』코너 / 어울림 검색 → 수업지도안+활동지

Ⅵ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

1. ‘어울림 프로그램’ 운영

가. 1학기 범교과 교육활동: ‘공감’, ‘의사소통’, ‘갈등해결 운영’ (3차시)

나. 2학기 범교과 교육활동: ‘자기존중감’, ‘감정조절’, ‘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’ (3차시)

다. 교육 : 사이버폭력 예방교육(1차시), 도박예방교육(1차시,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)

2. ‘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’ 운영

가. 1학기 범교과 교육활동: 사이버폭력의 부정적 감정 극복하기(1차시)

나. 2학기 범교과 교육활동: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익히기(1차시)

3.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과 관련된 주제의 다양한 학생주도 프로그램

가. 교내 스포츠리그전 운영: 체육과 연계, 모든 학년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 운영

나. 언어폭력 예방 및 언어문화 개선 활동: 바르고 고운말 쓰기 캠페인(상시 운영)

다. 생활문화 개선 활동 : 교복 바르게 입기, 식생활관 예절 지키기 등

라. 생명존중 및 인권활동 : 세월호 8주기 추모 행사, 인권의 날, 애플 데이 행사

마. 사제동행 프로그램,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 공동체 모임 상시 운영 등

Ⅶ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안전대책

유 형	내 용
학교폭력 실태조사	- 정기 : 학기당 1회 (상반기: 전국 공동 실시, 하반기: 표본조사) - 수시 : 학교·학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-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계획 수립 : 취약지역 순찰 강화 (화장실, 탈의실)
교내 학교폭력신고	-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(10곳), 학생회 익명페이지 시범운용 - 담임교사의 문자·메일 등 다양한 신고체계 마련 - 피해추정·목격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 - 학생, 학부모,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 방법 안내(예방교육 시)
교사의 생활지도 및 관찰 상담	-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 - 인사성 키우기, 담임교사, 전문상담교사 등의 상담

교내·외 순찰	- 점심시간, 쉬는 시간, 방과 후 시간 등 취약시간 순회지도 - 학부모, 자원봉사자, 학생보호인력,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유기적 협력
특별교외지도 (방과 후)	- 고사 기간 금동, 수송동, 나운동, 조촌동 집중 지도 (4월, 7월, 10월, 12월) - 방학식, 종업식, 졸업식 후 학교 내, 학교주변 집중 지도 (1월, 7월)

Ⅷ 기대효과

1.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 및 근절하여 학생 사안 발생 감소
2. 학교폭력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대처로 교육 주체 간 신뢰 형성
3. 타인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는 건전한 문화 정착
4.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즐거운 교육 현장 조성